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나59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나594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252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피항소인 1. C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변론종결 2022. 7. 12.

판결선고 2022. 8.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25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F 답 39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9. 12. 27. 접수 제11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2010.”을 “2019.”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16행의 “30,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9행의 “사실” 다음에 “, ⑥ 치매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검사척도인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는 30점 만점에 23점 이하이면 치매 의심, 19점 이하이면 확정적 치매, 14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로 분류되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임상척도)는 0점은 치매 아님, 0.5점은 치매 의심, 1점은 경한 치매, 2점은 중증도 치매, 3점은 심한 치매, 4점은 매우 심한 치매, 5점은 말기 치매로 분류되며,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는 1점(인지장애 없음), 3점(경매한 인지장애), 7점(말기 치매 인지장애) 등으로 분류되는데, 원고는 2017. 7. 28. J병원에서 노년치매와 관련하여 MMSE 24점, CDR 0.5점, GDS

3점을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치매 증세가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위 의료원으로서도 기록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갑 제3호증의 2,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현